

15. 地方稅法施行令中 改正令

(관련 주요내용 발췌)

大統領令 第14,041號, 1993. 12. 31

지방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각각 “시설대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취득자의 사실상 취득 또는 등기·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유권이 사실상 귀속되는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9조의3제2항전단중 “그와 연결한 구·시·읍·면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를 “그와 연결한 구·시·읍·면지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의14제1항중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결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결한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개발제한지역”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를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

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로 한다.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관할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결한 구·시·읍·면지역(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안일 것.

제82조의2제2항제2호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로 한다.

제82조의3제2항본문중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를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 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본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1)의 단서를 삭제하

며, 동호(4)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2)의 본문중 “100분의 7”을 “100분의 3”으로, 동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제4항제1호본문 중 “비영리법인”을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100분의 7이상”을 “100분의 3이상”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을 “연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으로 한다.

제86조의3제1호(1)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하고, 동호(3)중 “건축물준공검사일”을 “건축물의 사용검사일”로 하며, 동호(4)를 삭제하고, 동조

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축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제96조제3호중 “사립의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제101조제2항중 “1년”을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별로 부과하는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frac{\text{사업장등의 납부세액}}{\text{사업장등의 총납부세액}} = \text{총납부세액} \times \left(\frac{\text{당해사업장등의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종업원수}} + \frac{\text{당해사업장등의 건축물면적(건축물연면적)}}{\text{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 \right) \div 2$$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등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의6본문중 “납기개시일”을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0조의7제1항중 “신고납부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정결정한 세액과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세액이 경정된 때에는 그 경정세액을 말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1)의 단서중 “연립주

택등 공동주택”을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중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결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결한 다른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제5호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본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의 제1종제5호중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을 “일반건설업”으로 하고, 제6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며, 제9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고, 제12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 부품 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며, 제14호중 “항공기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하고, 제33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며, 제37호중 “시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고 제45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6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50호중 “임산물제조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며, 제54호를 삭제하고, 제56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73호중 “담배포잡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46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1993. 12. 27, 법률 제4611호)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체납세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처리비로 주도록 신설함(령 제44조의2제4항)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축·조성 등 원시취득에 한하여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계취득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74조제4항 및 제96조제7호).
- 다.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경우와 같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있는 농지도 포함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79조의3제2항, 제79조의14제1항·제2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제1목).
- 라. 모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취득세의 증과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를 사무소용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정함(령 제84조의2제3항).
- 마. 다가구주택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하여 취득세의 증과 및 재산세의 누진세율적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 및 제142조).
-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대용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7에서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동조제4항).
- 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증과되는 1가구 2자동차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세에 기재된 가족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도
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 및 령 제99조의3제4항).

아. 인·허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
와 종별구분을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받는 대상에 상품권발행등록 및
유물복제등을 추가함(령 제124조제2항 및 령 별표).

자.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기준을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하던
것을 종업원의 총수와 사업장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법인세할 산정방법을 개
선함(령 제130조의 5).

차. 주민세 법인세할의 징수방법이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신고납부방법
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령 제130조의18).

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새로이 정하여 교
통세의 신설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 하도록 함(령 제173조의2).

〈법제처 제공〉

가는길 즐겁게, 오는길 깨끗하게